

#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 904
----------	--------------

제출일자 : 2005. 5. 17.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1.5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제명을 표기코자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납부시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 (안 제25조의2)

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한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 (안 제27조)

다.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 (안 제37조1항1호)

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의 삭제 (안 제71조 내지 제82조)

## 3. 참고사항

관련근거 : 경남도 세정과-494(2005.1.18)호의 표준안에 의함.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 2005 - 88 호

##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고성군 조례 제 호

###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3조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6조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나.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나. 가목이외의 주택
- | <과세표준>             | <세 율>                       |
|--------------------|-----------------------------|
| 4,000만원이하          | 1,000분의 1.5                 |
| 4,000만원초과<br>1억원이하 |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억원초과              |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4. 선박

-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중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를 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29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0조의 제목“(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항각호 및 제2항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7조제1항제1호의 <표> 중 “1,500씨씨이하”를 각각 “1,600씨씨이하”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2장 중 제7절(제71조 내지 제82조)을 삭제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5조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86조제1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1조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을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1조제1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

항중 “소득세법 ”을 “ 「소득세법 」 ”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 ”을 “ 「소득세법 」 ”으로 하고, 제37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을 “ 「자동차운수사업법」 ”으로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을 “ 「건설기계관리법」 ”으로 하고, 제40조의2중 “교통세법 ”을 “ 「교통세법」 ”으로 하며,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교통세법 ”을 “ 「교통세법」 ”으로 하고, “관세법 ”을 “ 「관세법 」 ”으로 하며, 제41조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 ”을 “ 「농업·농촌기본법」 ”으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 (생 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8. <u>종합토지세</u>                      ③ (생 략)                      1.~ 4. (생 략)                      ③ (생 략)</p> <p>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p> <p>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p> <p>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8. &lt;삭제&gt;                      ③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과세대상 등) -----                      -----<u>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u>-----                      -----                      -----</p> <p>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p>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항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신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p>제25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p>	<p>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25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p> <p>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p>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p> <p>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p>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p> <p>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p> <p>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p> <p>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건축물</p> <p>가. 주택</p> <p>&lt;과세표준&gt; &lt;세율&gt;</p> <p>1,200만원이하 1,000분의 3</p>	<p>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p> <p>-----</p> <p>-----.</p> <p>제27조(세율) ①-----</p> <p>-----.</p> <p>1. 토지</p> <p>가. 종합합산과세대상</p> <p>&lt;과세표준&gt; &lt;세율&gt;</p> <p>5,000만원이하 1,000분의 2</p>

<p>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p> <p>1,600만원이하 <u>초과금액의 1,000분의 5</u></p> <p>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p> <p>2,200만원이하 <u>초과금액의 1,000분의 10</u></p> <p>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p> <p>3,000만원이하 <u>초과금액의 1,000분의 30</u></p> <p>3,000만원초과 36만6천원+3,000만원</p> <p>4,000만원이하 <u>초과금액의 1,000분의 50</u></p> <p>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p> <p style="padding-left: 40px;"><u>초과금액의 1,000분의 70</u></p> <p>나. <u>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u> 그 <u>가액의 1,000분의 50</u></p>	<p>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초과</p> <p>1억원이하 <u>금액의1,000분의 3</u></p> <p>1억원초과 25만원+1억원초과</p> <p style="padding-left: 40px;"><u>금액의 1,000분의 5</u></p>
<p>다.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u> 기타 <u>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u> <u>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u> <u>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u></p> <p>라. <u>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그</u> <u>가액의 1,000분의 3</u></p> <p>2. <u>선박</u> 가. <u>고급선박</u> 그 <u>가액의 1,000분의 50</u> 나. <u>가목이외의 선박</u> 그 <u>가액의 1,000분의 3</u></p>	<p>나. <u>별도합산과세대상</u> <u>&lt;과세표준&gt;</u>                      <u>&lt;세율&gt;</u></p> <p>2억원이하                      1,000분의 2</p> <p>2억원초과                      40만원+2억원</p> <p>10억원이하                      <u>초과금액의 1,000분 의3</u></p> <p>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p> <p style="padding-left: 40px;"><u>초과금액의 1,000분의4</u></p> <p>다. <u>분리과세대상</u> (1) <u>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u> : <u>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u> (2) <u>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u> : <u>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u> (3) (1) 및 (2)외의 토지 : <u>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u></p> <p>2. <u>건축물</u> 가. <u>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u> <u>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u> <u>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u> <u>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u> <u>의 1,000분의 40</u> 나. <u>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u> <u>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u> <u>1,000분의 5</u></p>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생략)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u>&lt;과세표준&gt;</u>	<u>&lt;세율&gt;</u>
<u>4,000만원이하</u>	<u>1,000분의 1.5</u>
<u>4,000만원초과</u>	<u>6만원+4,000만원</u>
<u>1억원이하</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3</u>
<u>1억원초과</u>	<u>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u>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 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p>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p> <p>3. <u>분리과세대상</u>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p><b>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b> (생략) 1. (생략) <u>&lt;신 설&gt;</u>  2. (생략) <u>&lt;신 설&gt;</u>  3. ~ 6. (생략)</p>	<p><b>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b>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u> 3. <u>(현행 2.와 같음)</u> 4. <u>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u> 5. ~ 8. <u>(현행 3. ~ 6.과 같음)</u></p>
<p><b>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b> ① <u>법 제184조의</u>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b> ① <u>법 186조</u>----- ----- ----- ----- -----</p>

② (생략)

제30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생략)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부동산
2. -----부동산
3. -----부동산
4. -----부동산

②-----부동산  
-----100분의 75-----  
-----.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생략)**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배기량	씨씨당 세액
1,000씨이하	18원	800씨이하	80원
<b>1,500씨이하</b>	18원	1,000씨이하	100원
2,000씨이하	19원	<b>1,500씨이하</b>	140원
2,500씨이하	19원	2,000씨이하	200원
2,500씨초과	24원	2,000씨초과	220원

1의2. ~ 6. 생략

② (생략)

**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②(생략)

**제53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략)**

<신설>

**제55조(세율) ① ~ ②(생략)**

<신설>

**제7절 종합토지세**

**제71조 ~ 82조(생략)**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

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현행과 같음)**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씨씨당 세액
-----	-----	-----	-----
<b>1,600씨이하</b>	-----	-----	-----
-----	-----	<b>1,600씨이하</b>	-----
-----	-----	-----	-----
-----	-----	-----	-----

1의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세율) ①**-----  
-----1,000분의 215-----.

②(현행과 같음)

**제53조(납세의무자) ① ~ ④(현행과 같음)**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5조(세율)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7절 종합토지세 <삭제>**

<삭제>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

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생략)

1. ~ 3. (생략)

<신 설>

4. ~ 5. (생략)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서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 6. (현행4. ~ 5.와 같음)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②-----

-----재산세과세대장-----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토지·건축물 및 주택-----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 설>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1조(세율)-----  
1,000분의 1.5-----.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  
-----재산세-----  
-----재산세-----.

제93조(신고의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을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